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98
----------	-------

발의연월일 : 2026. 7. 30.

발 의 자 : 곽규택 · 조승환 · 박지원
김용태 · 유상범 · 신성범
김상훈 · 강대식 · 배준영
강승규 · 조지연 · 강명구
서천호 · 최은석 · 서범수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지정·조성됨.

한편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급격한 인구 감소와 침체로 인하여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이들 지역을 혁신도시로 조성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이 직면한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①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후단 신설>	제6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① ----- ----- -. <u>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u> <u>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u> <u>따른 인구감소지역이 우선적</u> <u>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u> <u>여 한다.</u>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